



- 이들 과도한 행정규제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물론
-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타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추가하였고, 체육시설물 사용구분과 기본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기별,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5. 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